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3월 3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 유성우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2110-5139), 주명선 사무관(2110-5407)

국토해양부 : 김일환 건축기획과장(2110-8212), 김경은 사무관(8213), 양승 주무관(8214)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자발적 참여 확대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을 공포하고, 다음 달(4.13)부터 시행 ◆

□ 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는 다음 달('11. 4.13)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 **민간** 등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 또한,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

*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CO_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정부는 지난 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 4.)」과 **「같은 법 시행령**('10. 9)」을 **각각 개정**·공포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 동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포일 : '11. 3.24)과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공포일 : '11. 3.31)를 마련하여 **각각 제정·공포**하였음

□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교부하도록 했음

 * (인증) 건축물 완공 후 신청·심사, (예비 인증) 건축물 완공 전 신청·심사

 *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 인증기관 지정, 인증관련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은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 **인증 건축물**이 생산한 전기량에 대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대상기관**(발전사업자 등)은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구매**

- 해당 건축물이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또한, 인증심사 시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며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관련 처리규정 및 기준을 갖추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 전문인력**(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음

□ 한편, 다음 달(4.13)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며

○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04)**"**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과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및 마크 ····· 4

< 참고 2>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5

< 참고 3>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공포 전문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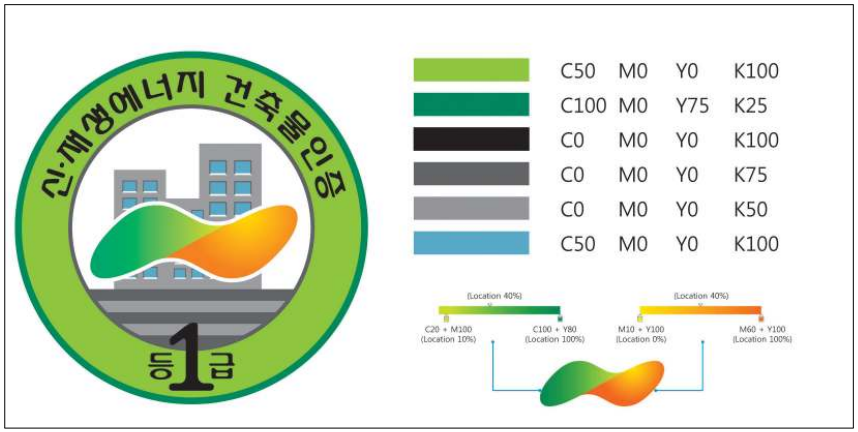
< 참고 1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및 마크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인증 등급
20% 초과	1등급: 20% 초과
15% 초과 20% 이하	2등급: 20% 이하 15% 초과
10% 초과 15% 이하	3등급: 15% 이하 10% 초과
5% 초과 10% 이하	4등급: 10% 이하 5% 초과
3% 초과 5% 이하	5등급: 5% 이하 3% 초과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마크



< 참고 2 >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의 적용대상 마련(제2조)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

□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3조)

○ 건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마련하고,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건축물인증 신청 및 처리기한의 설정(제6조 및 제9조)

○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건축물인증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50일 이내에 심사를 처리

□ 인증서의 발급(제8조)

○ 건축물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물인증을 표시하는 건축물인증 마크를 제공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제11조)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건축물인증기관의 지정 및 공동고시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기준(제3조)

【위임 근거】 : 규칙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제1항

○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한 내부 처리규정 및 기준 등을 마련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결과 통보 및 인증 재평가, 인증된 건축물의 취소 등

○ 인증기관이 보유(5명 이상)해야 하는 심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기사 또는 박사·석사·학사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을 보유

□ 인증 신청자의 구비서류(제4조) 및 인증심사 처리기간의 연장(제5조)

○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위임 근거】 : 규칙 제6조(건축물 인증의 신청 등)제2항

＊건축물 관련 제반 도면, 신·재생설비 인증서·성적서, 설계변경 사항 등

○ 인증기관이 50일의 처리기간에 심사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

【위임 근거】 : 규칙 제6조(건축물인증의 신청 등)제3항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산정기준 및 방법상 산출 값의 도출이 처리기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등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7조)

【위임 근거】 : 규칙 제7조(인증심사)제2항

○ 건축물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 제시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제10조) 및 심의사항(제11조)

【위임 근거】 : 규칙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인증운영위원회는 지경부와 국토부가 2년간씩 교대로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동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등

○ 인증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인증심사 결과, 건축물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 운영 및 관리 등

□ 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8조) 및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안 제12조)

○ 인증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려면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등급 등을 표시

< 참고 3 >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공포 전문

1.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령 제 177 호
국토해양부령 제 342 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4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과 건축물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업무시설(신축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정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수행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에 부합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3.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취소
5. 건축물인증 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의 유지, 관리 및 보고
6. 그 밖에 건축물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건축물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하 "건축물의 소유자"라 한다)가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설계도면(설계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및 설계설명서

2.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인증시험 등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라 한다)을 심사하고,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건축물에 대한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른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 건축물인증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③ 센터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표시하는 건축물인증 마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심사결과서를 분석·관리하여 인증대상, 인증 날짜 및 인증 등급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신청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비인증의 내용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①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받은 건축물에 있는 설비를 말한다)를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서의 내용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에 따른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련 법령 및 공동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고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생략하였음

2. 공동고시(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107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3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마친 후 최종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비인증"이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산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건축 및 사용될 예정임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위하여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란 신청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5.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6. "총에너지사용량"이란 "에너지 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7. "에너지 소요량"이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연간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제3조(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기준 등) ①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고시하여 정한 인증업무 처리규정 및 기준"은 인증기관이 인증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결과 통보 및 인증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된 건축물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인증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구비서류) ①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 1부(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축도면, 기계도면, 전기도면, 부위별 성능내역, 건물 외피에 대한 벽체/창호 전개도, 창 면적비 산출서, 기계부하계산서, 장비용량계산서, 조명밀도계산서, 건물조감도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및 시방서 1부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또는 성적서 1부.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부.(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기타 인증심사 자료에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요청한 자료 1부.(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승인한 자료에 한정한다)

②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 인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되 제1호는 제외한다.

제5조(처리기간의 연장) 규칙 제6조제3항에서 "인증기관은 인증시험 등 공동고

시로 정하는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50일의 처리기간에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출 값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 인증기관의 현장확인 절차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가. 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인증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확인 일정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나.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고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다.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험가동 등 해당 설비의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인증기관의 구조개편 등 센터의 장이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증심사) 규칙 제7조제1항에서 "공동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란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 신청 건축물에 대한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미리 센터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말한다.

제7조(산정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위한 총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ISO 13790 등 국제 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8조(인증건축물의 지원) 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인증 소유자"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인증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법 제12조의7제5항에 따른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의 범위)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련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가동실적을 알 수 있

는 운전데이터 등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장은 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제3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후관리 결과를 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해당기간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을 지정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동일한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3.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기업에서 10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위촉된 민간위원에 한정한다)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고시로 정하는 중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4에 따른 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12조(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인증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표시하거나 인증서를 받은 것을 인쇄물 또는 광고물 등으로 홍보에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등급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 소유자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규칙 제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함께 받고자 동일한 인증기관에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및 관리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인증에 관한 지원 및 관리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1.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제출한 인증심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의 확산과 진흥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의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운영세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인증현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고시와의 관계) ① 규칙 제6조에 따른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산정방법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329호)」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방법에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일 경과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음 2년(2011. 4. 13. ~ 2013. 4. 12)의 인증운영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한정하여 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별 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7조제1항 관련)

$$\text{신·재생에너지공급률} = \frac{\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text{총에너지사용량}} \times 10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에너지원		환산계수	비고
태양광		0.292 toe/kW · 년	이용률 15.5%
태양열		0.064 toe/㎡ · 년	시스템효율 44%
지열	냉방	0.174 toe/RT · 년	부하율 60%
	난방	0.444 toe/RT · 년	부하율 40%
연료전지		1.789 toe/kW · 년	이용률 95%

주) 위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에 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등급을 산정함

<에너지 소요량 산정기준>

에너지 소요량 = 연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text{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frac{\text{난방에너지소요량}}{\text{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냉방에너지소요량}}{\text{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급탕에너지소요량}}{\text{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조명에너지소요량}}{\text{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frac{\text{환기에너지소요량}}{\text{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